

2025년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 공모 안내

2025년

**경기도 장애예술인
전문예술 활동지원**

신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
www.ncas.or.kr



접수 기간

3.4.(화)~3.18.(화)

결과 발표

4.7.(월) *예정

문의

031-231-0884/7236

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잠재되어있는 예술성을 발견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'2025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' 사업공모를 진행합니다. 2022년부터 진행했던 '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교육사업'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성장 및 활동 확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장애예술인 및 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문과 신청서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.

2025년 3월
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
- 사업기간 : 2025년 3월 ~ 12월
- 사업내용
 - 장애예술인(단체)의 예술적 성장 및 확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
- 지원대상
 - (단체) 구성원 중 장애예술인이 소속 되어있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단체
 - (개인) 경기도 거주 장애예술인
- 선정규모
 - 총 지원금액 (750,000천원)

선정 규모		지원 한도
(단체)	20~30건 내외	평균 22백만원
(개인)	30건 내외	정액 3백만원

※ 최종 선정 건수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주최 및 주관 : 경기도, 경기문화재단
- 문의 : 예술본부 예술지원팀 (031-231-0884, 7236)
 - ※ 평일 기준 10시부터 16시까지 전화 문의 가능, 방문 시 전화로 사전 예약

□ 공모일정

일정	○ 접수기간 : 2025. 03. 04.(화) ~ 03. 18.(화) 16:00, 15일간 ○ 심 의 : 2025. 03. 24.(월) ~ 2025. 04. 03.(목) - 행정심사, 서류, 인터뷰 심의 ※ 개인의 경우 행정심사, 서류심의만 진행됨 ○ 결과발표 : 2025. 04. 07.(월) (예정) ※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---	--

□ 2025년 주요 변화

구분	2025년
연속 지원	• 기 공모사업에 3회 이상 선정 이력이 있는 장애예술단체의 경우,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신청 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필요한 예산수립 및 중장기 운영 방향 로드맵 필수 제출 ※자원신청서 양식 서식1-4 참고 ※ 미제출시 행정심사에서 탈락
컨설팅	• 장애예술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전 컨설팅 시행으로 공모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여 교부신청서에 의무 반영토록 함
역량 강화 교육	• 선정 단체 대표자 대상 장애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선정 예술인(개인)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 진행 ※ 교육 프로그램 의무 참여, 불참 시 차기 연도 심의에 불이익

2025년 장애(예술)인 전문예술 활동지원

구분	단체	개인
사업목표	장애예술단체의 창작 발표 등 예술적 성장 및 육성을 도모하는 전문예술 활동 지원	장애예술인의 활동 및 성장을 위한 과정형 활동지원으로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 제공
신청자격	(단체)구성원 중 장애예술인이 소속되어있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단체 ※ 단체 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-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이 30%이상인 단체, 혹은 프로젝트 참여자(수혜자) 중 장애인이 30%이상인 단체 ※ 교육단체의 경우 교육을 받는 수혜자가 모두가 장애인이어야 함 (관객 수혜자 불포함) - 프로젝트 주요 참여자 변경 불가 → 변경시 변경신청서 필수 제출 - 참여 장애예술인 명단 필수 제출 ※ 활동사업의 경우 지원신청 시 필수 제출 ※ 교육단체는 모집 완료시 제출 -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-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단체 ※ 공고일 전에 등록된 단체	(개인)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기도 거주 장애예술인 - 예술분야에서 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 * 문학,미술,음악,무용,연극,국악,사진 등 ▶ 근거 :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, 예술인 복지법 제2조 -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(※ 세부기준표 참고) ▶ 근거 :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-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※ 주민등록 초본 신청서에 첨부 (경기도 거주 확인) ※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신청서에 첨부
신청장르	-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*에서 정의하는 장르 전체 ※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※ 단체 지원시 활동/교육 지원신청서 양식 확인 후 제출	
운영기준	- 창작·준비·기획·실행·발표·교육 - 낭독, 쇼케이스, 공연, 오픈스튜디오 등 일반적인 공연·전시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 발표 - 활동 및 교육 장소는 경기도에 한정함	- 창작·준비·기획·실행·발표·교육 - 구체적인 작업계획 수립·준비 및 시연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 창작활동 지원 (향후 지속가능성 판단 필요) - [창작활동 예시] - 예술활동 기반의 창·제작비, 기획준비금, 예술프로젝트, 실험 및 담론 등 ※ 활동 지역은 경기도에 한정함 [문학 분야] - 창작·준비·기획·실행·발표·교육 - 원고제출 및 심의를 통해 지원금 전액을 창작 지원 상금방식으로 지급 - 미발표신작, 미완성작품(습작 등) 모두 지원 가능함 - 원고제출 ※ 필수제출자료 양식 내 원고 기재 - 소설·동화(단편, 중·장편), 시·시조·동시, 평론, 수필, 아동문학, 희곡 등

지원규모	• (단체) 총 30건 내외(총 6.6억원) : 건당 평균 22백만원 ※ 접수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※ 2024년 지원단체 대상 평가모니터링 결과 가점제로 연속 지원 추진 ※ 지원신청서 예산편성 작성시 사업 규모에 맞게 지원금 편성	• (개인) 총 30건 내외(약 90백만원) : 지원비 3백만원(정액) ※ 접수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																		
지원방침	- 창작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기획, 운영, 공간대여, 출연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비 -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석 의무 (단체 대표) ※ 불참시 차기 연도 지원사업 심의에 불이익 - 선정 이후 재단에서 제공하는 전문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교부신청 - 기 공모사업에 3회 이상 선정이력이 있는 단체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 연구예산수립과 중장기 운영방향 로드맵 제출 - 대표자 외 정산 담당자 필수 지정 및 정보 기재의무 - 정산 시 회계감사 검증 필수	- 장애예술인의 활동 및 성장을 위한 과정형 활동 준비 지원 (장애예술 교육 자문 컨설팅 워크숍 리서치 가능) -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 참석 의무 - 연속지원시, 동일사업 선정 불가																		
추진절차	사업신청 → 심의 및 결과발표 → 사전 컨설팅 및 지원금 교부 →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→ 성과공유 워크숍 → 정산결과 보고																			
심의방침	• 심의위원 구성 : 분야별 전문가 3~5인 • 심의방식 - 행정 심사 : 필수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- 서류 심의 :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순 선정하여 개별 공지 - 인터뷰심의 : 질의응답(단체별 10분 이내) ※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될 수 있음	• 심의위원 구성 : 분야별 전문가 3~5인 • 심의방식 - 행정 심사 : 필수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- 서류 심의 :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순 선정																		
심의기준	• 단체 <table> <tr> <th>항목</th><th>심의기준(내용)</th><th>배점</th></tr> <tr> <td>적정성 및 타당성</td><td> •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. • 사업 취지 및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,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이다. </td><td>30</td></tr> <tr> <td>구체성 및 실현가능성</td><td> • 참여자 모집, 공간 활용,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추진 방향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, 예산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. • 장애예술인의 참여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. </td><td>30</td></tr> <tr> <td>사업 추진역량</td><td> •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. •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. (관련 분야 충분한 지식 및 경험, 노하우 등) </td><td>30</td></tr> <tr> <td>기대효과</td><td> •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와 향유 확대에 기여한다. </td><td>10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100</td></tr> </table>		항목	심의기준(내용)	배점	적정성 및 타당성	•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. • 사업 취지 및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,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이다.	30	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• 참여자 모집, 공간 활용,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추진 방향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, 예산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. • 장애예술인의 참여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.	30	사업 추진역량	•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. •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. (관련 분야 충분한 지식 및 경험, 노하우 등)	30	기대효과	•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와 향유 확대에 기여한다.	10	합 계		100
항목	심의기준(내용)	배점																		
적정성 및 타당성	•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. • 사업 취지 및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,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이다.	30																		
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• 참여자 모집, 공간 활용,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추진 방향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, 예산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. • 장애예술인의 참여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.	30																		
사업 추진역량	•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. •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. (관련 분야 충분한 지식 및 경험, 노하우 등)	30																		
기대효과	•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와 향유 확대에 기여한다.	10																		
합 계		100																		

	· 개인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항목</th><th>심의기준(내용)</th><th>배점</th></tr><tr><td>적정성 및 타당성</td><td>·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. · 프로그램 주제와 목표가 명확하다.</td><td>30</td></tr><tr><td>구체성 및 실행가능성</td><td>· 활동계획(프로젝트) 에 예술성, 참신성, 독창성이 있다. · 창작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.</td><td>30</td></tr><tr><td>사업 추진역량</td><td>·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. - 예술성, 독창성, 참신성 등 ·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.</td><td>30</td></tr><tr><td>기대효과</td><td>·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.</td><td>10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100</td></tr></table>	항목	심의기준(내용)	배점	적정성 및 타당성	·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. · 프로그램 주제와 목표가 명확하다.	30	구체성 및 실행가능성	· 활동계획(프로젝트) 에 예술성, 참신성, 독창성이 있다. · 창작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.	30	사업 추진역량	·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. - 예술성, 독창성, 참신성 등 ·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.	30	기대효과	·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.	10	합 계		100
	항목	심의기준(내용)	배점																
	적정성 및 타당성	·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. · 프로그램 주제와 목표가 명확하다.	30																
	구체성 및 실행가능성	· 활동계획(프로젝트) 에 예술성, 참신성, 독창성이 있다. · 창작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.	30																
	사업 추진역량	·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. - 예술성, 독창성, 참신성 등 ·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.	30																
	기대효과	·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.	10																
	합 계		100																
	· 개인(문학)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항목</th><th>심의기준(내용)</th><th>배점</th></tr><tr><td>적정성 및 타당성</td><td>·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계획 및 결과물(원고)이다. · 원고의 주제가 적절하고 목표가 명확하다.</td><td>30</td></tr><tr><td>구체성 및 실행가능성</td><td>· 제출 원고에 예술성, 참신성, 독창성이 있다. ·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.</td><td>30</td></tr><tr><td>사업 추진역량</td><td>· 제출한 원고의 우수성 및 완성도가 높다. ·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. - 예술성, 독창성, 완성도 등</td><td>30</td></tr><tr><td>기대효과</td><td>·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.</td><td>10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100</td></tr></table>	항목	심의기준(내용)	배점	적정성 및 타당성	·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계획 및 결과물(원고)이다. · 원고의 주제가 적절하고 목표가 명확하다.	30	구체성 및 실행가능성	· 제출 원고에 예술성, 참신성, 독창성이 있다. ·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.	30	사업 추진역량	· 제출한 원고의 우수성 및 완성도가 높다. ·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. - 예술성, 독창성, 완성도 등	30	기대효과	·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.	10	합 계		100
	항목	심의기준(내용)	배점																
	적정성 및 타당성	·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계획 및 결과물(원고)이다. · 원고의 주제가 적절하고 목표가 명확하다.	30																
	구체성 및 실행가능성	· 제출 원고에 예술성, 참신성, 독창성이 있다. ·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.	30																
	사업 추진역량	· 제출한 원고의 우수성 및 완성도가 높다. ·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. - 예술성, 독창성, 완성도 등	30																
	기대효과	·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.	10																
합 계		100																	
※ 2024년 선정단체 대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가점(10점 내외) 부여																			
지원신청 및 접수	·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- 2025. 03. 04.(화) ~ 03. 18(화) (15일간) (16:00까지) - 서면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 -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'NCAS 사용자 회원가입' 지원신청 매뉴얼'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- 안내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(1577-8751)																		
의무사항	·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은 25년 10월 31일 이전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 · 단체 대표는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등, 개인 선정자는 개인 컨설팅 등 모든 과정에 의무 참석해야 함 · 기 공모사업에 3회 이상 선정된 이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, 교부신청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연구예산 수립(사업 예산의 10%이내), 중장기 운영방향 로드맵 제출 · 컨설팅 및 모니터링, 중간점검 등 사업 기간 내 현장방문이 필요할 시 협조하여야 함 · 모니터링 평가 결과지표는 차년도 공모사업 심의에 반영됨 ·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는 예술인 성평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※ 선정 후 별도 공지 · 홍보물 제작 시 주최·주관·사업명 등 표기 · 추후 정산 및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																		
신청 및 선정	·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· 국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 기관·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·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																		

제외 대상	· 학교, 종교기관, 친교 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·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(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) ·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·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및 사업(중복지원 불가) ·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·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·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, 화의, 법정관리, 민·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·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·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※ 유사중복의 개념: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
기타	·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·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· 심의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·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이외의 개별적인 심의 미선정 사유를 안내하지 않음 ·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음 ·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, 공고일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· 상기 기술한 의무사항 및 지원방침(참석의무)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를 요청받을 수 있음
문의	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 예술지원팀 / 031-231-0884, 7236 ※ 평일 10시~16시까지 운영·문의 (점심시간 12-13시 제외) ※ 장애예술인(단체)의 편의를 위해 '경기예술인지원센터'방문 시, 현장 접수 가능